

고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

의 안 번 호	제 579 호
------------------	---------

제출년월일 : 1999.10.11.

제출자 : 고성군수

1. 폐지이유

○ 도로교통법에 정·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로서 차의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은 특별시장, 광역시장, 도지사의 권한위임 사항으로서 고성군견인 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거 군수에게 권한위임된 내용과 같으므로 폐지하고자함.

2. 주요골자』

고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폐지

3. 참고사항

- 도로교통법 제31조의2 제2항(차의견인 및 보관업무등의 대행)
- 도로교통법 제104조 및 동법시행령 제71조의2(권한의 위임 및 위탁)
- 규제개혁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

4. 본문 : 덧붙임 내역과 같음

고성군 조례 호

고성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

고성군 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